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15
----------	-----

제출년월일 : 1999.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정이유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 시행되어 왔으나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법률 제5958호 '99. 4.15)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을 명시(안 제4조, 제6조, 제7조)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중 하자보증금 예치 및 운용방법을 규정(안 제5조)
- 자동차폐차영업소의 업무범위 및 시설기준을 명시(안 제8조)

☐ 입법예고 결과

입법안 제4조 제1항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2호의 “사업장이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진천군 소재 문화주유소 대표 류평렬로부터 도로 연결기준 삭제 의견이 접수되어 민원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자율경쟁 원칙에 의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를 수용, 동호의 조문을 삭제하였음.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 것
2.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 할 것

②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이상 또는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신고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이하 “폐차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제8조(폐차영업소의 설치) 폐차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제6조제1항관련)

구 분		업 종 별	자동차종합 정 비 업	소형자동차 정 비 업	자동차부분 정 비 업	원동기전문 정 비 업
사 업 장 면 적(m')	작업장·검차장·사무실· 부품창고 등의 총면적		1천이상	400이상	100이상 (인구50만이상 도시는70이상)	300이상
시 설 및 장 비	1. 검사시설(뱃트 또는 리프트)	○	○	○		
	2. 체인부록 (1톤이상)					○
	3. 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포함)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1. 제동시험기	○	○			
	2. 전조등시험기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4. 속도계시험기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
	7. 매연측정기	○	○	○		○
시 험 기 및 측 정 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2. 노즐시험기					○
	3. 압력측정기	○	○			○
	4. 회전반경측정기	○	○			
	5. 휠밸런스	○	○	○		
	6. 토인측정기	○	○			
	7. 캠버캐스터측정기	○	○			
	8. 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
공작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2. 실린더호우닝머신					○
	3. 밸브시트그라인더					○
	4. 밸브시트카터					○
	5. 크랭크연마기					○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

자동차폐차업시설기준 (제7조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3천㎡이상
장 비	구 난 차 (견인능력 3톤이상)	1대이상
	지 게 차 (인양능력 3.5톤이상)	1대이상
	중 량 기 (계량능력 20톤이상)	1식이상
	압 축 기 (투입용적 10㎡이상)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이상
	파 쇄 기 (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이상)	
	전 단 기 (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이상)	
	용 해 로 (용해능력 1회당 5톤이상)	

주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별표 3]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기준 (제8조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대지(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00㎡이상
장 비	중 량 기 (계량능력 10톤이상)	1식이상
	고철운반용자동차 (최대적재량 2톤이상)	1대이상
	지 게 차 (인양능력 3.5톤이상)	1대이상

주 : 폐차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관계법령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8조(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② 시·도지사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9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13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6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이상 또는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 ② 시·도지사는 섬(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신고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9조(폐차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이하 “폐차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7의 시설을 갖추는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제140조(폐차영업소의 설치) ① 폐차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폐차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폐차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26]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제133조제1항관련)

구 분 \ 업 종 별		자동차종합 정 비 업	소형자동차 정 비 업	자동차부분 정 비 업	원동기전문 정 비 업
사 업 장 면 적(m ²)	작업장·검차장·사무실· 부품창고 등의 총면적	1천이상	400이상	100이상 (인구50만이상 도시는70이상)	300이상
시 설 및 장 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2. 체인부록 (1톤이상)				○
	3. 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포함)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1. 제동시험기	○	○		
	2. 전조등시험기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4. 속도계시험기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
	7. 매연측정기	○	○	○	○
시 험 기 및 측 정 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2. 노즐시험기				○
	3. 압력측정기	○	○		○
	4. 회전반경측정기	○	○		
	5. 휠밸런스	○	○	○	
	6. 토인측정기	○	○		
	7. 캠버캐스터측정기	○	○		
	8. 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
공작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2. 실린더호우닝머신				○
	3. 밸브시트그라인더				○
	4. 밸브시트카터				○
	5. 크랭크연마기				○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7]

자동차폐차업시설기준 (제139조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3천㎡이상
장 비	구 난 차 (전인능력 3톤이상)	1대이상
	지 게 차 (인양능력 3.5톤이상)	1대이상
	중 량 기 (계량능력 20톤이상)	1식이상
	압 축 기 (투입용적 10㎡이상)	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이상
	파 쇠 기 (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이상)	
	전 단 기 (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이상)	
	용 해 로 (용해능력 1회당 5톤이상)	

주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별표 28]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기준 (제140조제1항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대지(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00㎡이상
장 비	중 량 기 (계량능력 10톤이상)	1식이상
	고철운반용자동차 (최대적재량 2톤이상)	1대이상
	지 게 차 (인양능력 3.5톤이상)	1대이상

주 : 폐차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등) ①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기준으로 본다.